

발송번호: 9-5-2022-068661221

발송일자: 2022.09.08.

제출기일: 2022.11.08.

특 허 청 의견제출통지서

출 원 인 성 명 주식회사 베베루아 (특허고객번호: 120200559718)

주 소

대 리 인 명 칭 특허법인본

주 소

지정된변리사 김남혁 외 2명

출 원 번 호 40-2022-0136083

상 품 류 제 35 류

1. 이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아래와 같은 거절이유가 있어 이를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제출기일까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(관계법령 : 상표법 제54조 및 제55조,

의견서 :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,

보정서 :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)

2. 위 제출기일에 대하여 매회 1월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기간연장승인통지는 하지 않습니다. 기간연장은 2회 이상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, 기간연장신청서는 지정(연장)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.

거 절 이 유

이 상표등록출원 상표는 다음 거절이유가 있어 통지합니다.

1.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2. 상표법 제35조 제1항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아래 거절이유의 상세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 상기 제출기일 까지 의견(답변, 소명)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: 상표견본이미지

본 출원	인용	인용	인용	인용
4020220136083	401753917	401835061	4020210062620	4020210146758

	ZOYZOII	 JOIJOI	ZOIZOI 조이조이	조이조이
인용 4020210195548				
 JOIJOI				

(※ 본 통지서의 상표권본 이미지는 출원서에 첨부된 상표권본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)

[거절이유 1]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

이 출원상표는 아래와 같이 타인의 선등록 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(또는 유사)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다만,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아래 지정상품을 삭제하는 보정(법 제40조)을 하거나 분할하여 출원하는 경우(법 제45조)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- (1) 이 출원상표는 타인의 선등록상표 제401753917호(ZOYZOII)와 칭호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입니다.
 - 지정상품: 가방 도매업, 가방 소매업, 가방 판매대행업.
- (2) 이 출원상표는 타인의 선등록상표 제401835061호(JOIJOI)와 칭호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입니다.
 - 지정상품: 향수 도매업, 향수 소매업, 향수 판매대행업, 화장품 도매업, 화장품 소매업, 화장품 판매대행업.

[거절이유 2] 상표법 제35조 제1항(또는 동법 제34조 제1항 제7호)

이 출원상표는 아래와 같이 타인의 선출원 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(또는 동일)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선출원 상표가 최종 설정등록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다만, 아래 지정상품을 삭제하거나(법 제41조) 분할하여 출원(법 제45조)하는 경우, 또는 해당 선출원상표가 거절결정, 출원취하, 출원포기 또는 무효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- (1) 이 출원상표는 타인의 선출원상표 제4020210062620호(조이조이 ZOIZOI)와 칭호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 - 지정상품: 소매 목적의 통신매체상의 상품전시업, 상품수출입업무대행업, 향수 도매업, 향수 소매업, 향수 판매대행업, 화장품 도매업, 화장품 소매업, 화장품 판매대행업, 인터넷 종합쇼핑몰업,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.
- (2) 이 출원상표는 타인의 선출원상표 제4020210146758호(조이조이)와 칭호가 동일 또는

